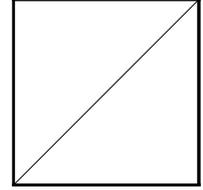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7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10. 4. (제17차)	

(주)블루베리엔에프티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10. 4.

1. 의결주문

(주)블루베리엔에프티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2.14.부터 (주)블루베리엔에프티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 과징금 2,250만원 부과 : ♡♡♡ [일반투자자]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

다.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위반 행위로 동법 제429조의2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과징금 22,5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 [일반투자자]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주 소 : 00시 00구 00대로00길 00

□ 조치이유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 △△△은 2017.12.1.부터 2019.2.28. 기간중(총 302일) (주)블루베리엔에프티 주식 282,465주를 매수하고 243,201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81일에 걸쳐 단일가매매 시간에 실제 매수체결 의사 없이 97,688주(564회)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킨 후 이를 반복적으로 정정하고(66회, 15,337주) 최종적으로 취소(612회, 88,397주)하여 예상체결가를 다시 하락시키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으며

접속매매시, 53일에 걸쳐 장중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37,132주(77회) 매수주문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2017.12.1.부터 2019.2.28. 기간의 거래일 총 302일중 197일에 걸쳐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호가관여율 : 0.84%*, 주가변동폭 : 174.24%, 부당이득 : 산정곤란】

* 시종가시간대의 호가관여율은 4.53%

< 붙임 >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176조 또는 제 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 4. (“생략”)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단	특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04	02-3145-5107